

<토론 요지>

천 정 배

오늘 토론의 제목은 한국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 유엔 활동을 할 것인가로 되어 있고 이 제목에 대하여 인권대회 공대위(코누크) 활동의 경험을 살려 발표하라는 것이 주최 측이 저에게 준 과제입니다. 그런데 인권대회 공대위는 지난 해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던 세계인권회의와 그 준비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그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던 한시적 조직이었고 그 활동도 주로 다른 민간단체(엔지오)들과 공동으로 벌인 연대 활동이어서 엄밀히 말해 대 유엔 활동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공대위의 경험만으로 대 유엔 활동을 조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도 대 유엔 활동에 관해 아무런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위 공대위 활동 이외에는 1992년 7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설치된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의 최초보고서를 검토하는 회의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반박보고서를 집필하는 데에 참여하고 위 회의에 참관했던 것이 유일한 대 유엔 활동 경험이기 때문에 적절한 토론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경험의 면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몇 마디 해 볼까 합니다.

인권분야에서 유엔의 역할이 어떤 성질의 것이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우선 우리 나라가 가입한 유엔 인권조약들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요인권조약에 거의 모두

가입했습니다. 고문방지협약에도 곧 가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올봄에 재일동포들이 중심이 된 인권단체가 주일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한국의 인권조약 가입을 촉구하려고 했는데 대사관 관계자가 일본과 한국의 가입상황을 알려주며 설명하는 것을 보니 일본보다도 우리 정부가 더 많은 조약에 가입해 있어 더 이상 말을 못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은 한일 양국의 변호사들이 모인 가운데 일본의 어느 변호사가 한국은 어떻게 운동을 해 한국 정부로 하여금 그토록 많은 인권조약(예컨대 비규약의 선택조항 및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었느냐며 한국의 운동경험을 말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며 한국의 변호사들은 답변이 궁해 찢찢 맨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인권조약들은 한국의 국내법에 비해 훨씬 수준 높은 인권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권조약들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 그것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반박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인권이사회와 같은 기관으로 하여금 의미 있는 비판과 권고를 하게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등이 그 활용방법에 속합니다. 한국 정부는 스스로 가입한 조약, 즉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조약에 따라 이루어진 유엔 관련기구의 활동을 편향된 일부 외국인들의 것으로 쉽사리 일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 인권분야에서 대 유엔활동이 가지는 의미는,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국제적 토론의 마당 - 우리 사정을 알린다는 면을 강조하자면, 홍보 또는 선전의 마당 - 이 마련돼 있는데 그 마당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1992년에 위에서 말한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관하고자 서울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제네바 유엔본부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회의장면도 녹취할 수 있을까 조바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지에 있는 세계기독교 교회협의회(WCC) 관계자들에게 부탁을 해 미리 등록증(크리덴셜)을 얻어두기도 했습

니다. 그러나 막상 회의장소에 도착해 보니 제 조바심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등록증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출입문에 있는 경비원에게 한두마디 형식적인 말로 용무를 밝히기만 하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으며 회의장면을 비디오 촬영하는 데에도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폐쇄와 통제에 길들여져 있던 저에게 공개와 자율이 지배하는 듯한 유엔의 무대는 신선한 충격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유엔이 온 세계의 거의 모든 정부의 대표들이 모여 끊임없이 발언을 하는 마당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 발언의 결과가 무어 그리 대수롭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토론 마당에는 단순히 정부의 대표들의 발언 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발언(회의 석상의 구두발언 뿐만 아니라 각종 간행물의 배포, 로비활동까지 포함)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엔과 그 관련기구에서 근무하거나 그 의뢰 또는 요청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발언입니다. 인권고등판무관을 비롯한 인권분야의 유엔관계자, 특별보고자, 인권이사회의 구성원들과 같은 사람들은 특정국가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그들의 활동은 인류 보편의 인권신장 및 보호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향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본 인권이사회의 회의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그것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음을, 또한 국제노동기구가 한국의 노동악법에 대해 건설적인 권고를 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엔지오의 활동입니다. 저는 유엔의 공식회의에서 엔지오 대표가 단순히 방청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발언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 나라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만이 발언할 수 있을 뿐 민간인의 발언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작년 쯤에 어느 지방의회

가 시민도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것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때만 해도 저는 이 판결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유엔을 보고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엔지오의 활동은 발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조사, 제안 등을 통해 유엔의 공식기구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회의의 산물인 인권고등판무관 직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엔지오들의 주창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선진적인 엔지오들은 후발 엔지오들에 대해 물심양면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대회 공대위와 인권협은 이번 교육의 공동주최자인 인터내셔널 써비스와 세계교회협의회 등으로부터 많은 정보와 편의는 물론 상당한 재정지원까지 받아 왔습니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국제적 토론의 마당이 있다는 것은 한국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옹호하는데 특별한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 마당에서 앞선 인권의식, 인권이론, 운동론, 국제적 운동경험을 배울 수(물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인권의식과 인권상황이 열악한 현재의 조건 아래에서 이 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 자신만 하더라도 위 공대위의 활동을 통해 인권의 보편성, 임팩터티, 인권교육의 중요성, 여성의 권리의 중요성 등의 문제에 처음 접하거나 인식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그 마당을 우리 문제에 관한 홍보, 선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권문제가 사회 성원의 관심사에서 멀리 벗어나 있고 언론마저 극단적으로 보수화해 있는 우리의 처지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의 마당은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와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엔지오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국제인권의 마당은 홍보의 면에서 아직도 우리의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귀중한 채널의 하나입니다.

세째, 나아가 우리는 그 마당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제적 여론과 유엔기구의 활약을 조직해 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에 관한 인권이사회 및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가 그 예입니다.

네째, 그 마당에는 우리 정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토론에 참여하는 자는 어느 정도 명분과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속 마음이야 어떻든 보편적 인권개념에 입각해 발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뜻하지 않게 구체적인 약속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권회의에서 우리 정부 대표가 한 몇 차례의 발언은 그 내용이 비교적 훌륭했으며 인권이사회에서는 우리 정부 대표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약속이나 발언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새삼스럽게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유엔이라는 마당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한국의 민간운동단체들은 종래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제 사정에 매우 어둡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많이 배출하지도 못했습니다. 국제인권활동에 대해 사대주의라는 등의 비난을 가하는 분위기마저 일부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국제인권활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며 그 인종이나 민족, 국적 여하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인권개념의 최고원리가 아닌가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인권을 옹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활동은 본디 전 인류적 차원의 것이지 민족이나 국가 별로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류의 현 단계의 발전 정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족이나 국가 별 실천이 불가피하게 돼 있는 것 뿐이 아닌가 합

니다. 그렇다면 국제인권활동이야말로 인권운동의 본원적 분야이고 우리가 이 본원적 분야를 도외시하고서는 참다운 인권운동에 나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국외에 있는 형제들의 인권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진전을 위해 성심껏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는 당연한 책무인 것이며 온정적 차원이나 우리 문제에 도움을 얻기 위한 전술적 차원의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 뿐 아니라 외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절실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해결을 위해 국제연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유엔인권제도, 인권이론, 국제적 인권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자료와 정보를 모으고 공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것과 같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자주 준비되어야 하며 매년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주요회의에 한국의 민간 관계자가 반드시 참가하고 그 성과를 국내에서 널리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째, 토론 능력과 설득 능력을 가진 국제인권 활동가를 길러야 합니다. 그 활동가는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국제인권에 관한 지식, 정보와 식견이 탁월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그런 활동가가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합니다. 토론회 등 교육프로그램을 자주 마련하고 해외의 우수한 훈련프로그램에도 보낼 수 있는 물적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네째, 우리의 현실과 운동경험에 비추어 국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국제연대를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인권운동 단체들 중에는 운동의 궁극적 성공을 향한 전략적 관점을 견지하지 못하고 탈정치적이거나 정부에 지나치게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단체도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일부 단체들 중에도 이미 민주화가 이룩된 서구의 운동단체들의 운동방식, 즉 탈정치적이고 합

법주의적인 방식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단체들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의 인권단체들이 국제적 교류를 통하여 운동방식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우리가 선도해야 할 분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한국의 인권현안을 국제무대에 정기적으로 또한 긴급하게 알리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외국의 인권단체들이 한국의 상황에 대해 국내의 어느 단체보다도 더 정통한 간행물을 발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상태를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됩니다.

여섯째, 우리는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 정부가 행하는 언동과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또는 외국인에 대해 취하는 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 관점에서 국제연대를 실천수범할 때에만 우리 국내의 문제에 대한 해외형제들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